

힘이 넘치는 대학,
행복이 가득한 대학

2026학년도 국립목포대학교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국립목포대학교
<http://www.mokpo.ac.kr>

2026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입학전형시행계획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모집인원	
			재외국민(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제외)/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인문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35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학과별 약간명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55		
	인문콘텐츠학부	76		
사회과학대학	법·경찰학부	45		
	행정·언론미디어학부	52		
	지적학과	43		
	사회복지학과	35		
	관광학과	20		
생명· 의과학대학	식품·제약공학부	45		
	원예산림학부	40		
	수산생명의학과	20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35		
	기계조선해양공학부	63		
	전기공학과	69		
	인공지능공학과	20		
	컴퓨터학부	90		
	건축·토목·환경공학부	80		
	도시계획및조경학부	44		
	건축학과	30		
경영대학	에너지화학공학과	20		
	경영학부	90		
생활과학 예술체육대학	경제무역학부	43		
	아동학과	30		
미래 라이프대학	식품영양학과	37		
	패션의류학과	30		
	음악공연기획과	20		
	아트앤디자인학부	35		
	체육학과	45		
	레저스포츠지도학과	10		
총장직속	상담심리치료학과	8		
	국제차문화학과	5		
	회계세무학과	5		
	스마트에너지학과	7		
	스마트조선시스템학과	7		
	글로벌학부	5		
계	35개 학과(부)	1,294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 간호학과, 사범대학, 약학과 및 자율전공학부는 모집대상에서 제외함

※ 건축학과는 수업연한이 5년임

※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학력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II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 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원서접수	2025. 12. 29.(월) ~ 12. 31.(수)	
	면접고사	2026. 1. 5.(월) ~ 2. 28.(수) 중 실시	
	합격자 발표	2026. 2. 2.(월) 까지	
	합격자 등록	2026. 2. 3.(화) ~ 2. 5.(목)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 주요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모집요강 별도 공고 예정

III

지원자격

1. 법령 구분에 따른 지원자격

구분	법령 구분	세부 지원자격
입학정원 2% (모집단위별 10%)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제외) -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 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제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이하 전 교육과정 이수자)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의 2% 이내)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예정)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구분	지원 자격	비고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가)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다)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라)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3.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예정)한 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구분	지원 자격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복수국적자 제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지원자는 어학능력(한국어 등) 최소 지원자격 요건 충족 필요(모집요강에 공고)

IV

전형방법 및 합격자 선발방법

1. 전형방법 : 면접고사 100%
2. 전형요소별 배점 및 비율

구분	모집단위	면접고사	비 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든 모집단위	100%(100점)	▪ 언어능력 40점 ▪ 전공소양 30점 ▪ 인·적성 15점 ▪ 사고력 15점

※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함

구분	제출 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우리 대학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학생)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8. 여권 사본(부모, 학생) 9.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2.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3.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우리 대학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우리 대학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 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 우리 대학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7. 신분증 사본

※ 이외 추가서류는 모집요강에 공지